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**지역경제과**
지정 등에 관한 조례(안)

(2011. 4. 5)

마포구의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
등에 관한 조례(안)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3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2011년 3월 25일

4. 근거법령

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 3

[법률 제10331호 (2010. 12. 1)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(안)

-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

[주요내용]

- (1) 안 제2조에서는 유통산업, 대규모점포, 대형유통기업, 중소유통기업, 상생발전 전통시장 등 용어의 뜻을 정의
- (2) 안 제3조에서는 구의 책무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·시행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
- (3) 안 제5조에서 유통사업자의 책무로서 관내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마포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함
- (4)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계획 수립하도록 함

- (5)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운영, 대상 업무 및 예산 지원 사항 등을 규정
- (6)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 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과 역사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,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기업상생발전협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지정,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각호에 대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
- (7) 안 제13조에서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의 고려사항을 명시
- (8)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전통 상업보존 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할 경우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적합할 경우 협의회 협의 거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, 기한, 철회유보, 부담 등의 부관을 부칠 수 있도록 함
- (9) 안 제16조에서 전통시장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, 경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